2016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 안 사 유

○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등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해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정리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3.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850,323	781,901	68,422	8.8
일 반 회 계		19,946	4,146	15,800	381.1
특별회계	소 계	830,377	777,755	52,622	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7,514	747,508	50,006	6.7
	도시개발특별회계	1,962	1,962	0	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901	28,285	2,616	9.2

나.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1,083,786	1,014,883	68,903	6.8
일 반 회 계		221,440	205,159	16,281	7.9
특별회계	소 계	862,346	809,724	52,622	6.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7,514	747,508	50,006	6.7
	도시개발특별회계	33,931	33,931	0	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901	28,285	2,616	9.2

2) 회계별 사업내역

【세 입】

○ 물순환안전국 2016년 세입 추경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2016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임.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총 계		108,389	39,967.5	68,421.5	
일반회계	소 계	15,805	5.5	15,799.5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489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수질오염원 관리		5.5	0.8	
	국가하천 유지보수			3,128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8,900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2,282	
하수도사업	소 계	63,784	13,778	50,006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노후하수관로 정비			50,000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6	
한강수질개선	소 계	28,800	26,184	2,616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상수원 민간단체 지원			0.7	
	잠실상수원 관리			10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550.2	
	환경기초시설 설치			2,055	

【세 출】

가.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21,440	205,159	16,281		
계속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8,527	7,038	1,489	○국고 매칭사업(50:50) 사업으로 '16년도 교부된 국고보조금 14억 89백만원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	p. 443
	서울시 물길조성 종합계획 추진	900	1,200	-300	○도심지 열섬현상을 줄이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6년 광장동 신규 실개천 조성사업을 매칭사업(시비:구비=6:4)으로 추진하였으나, ○광진구의 구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어 감추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p. 445
	수질오염원 관리	86	85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등 시민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00천원이 기편성 되었으나, 환경부에서 800천원 증액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	p. 456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6,430	1,243	5,187	○국고 매칭사업(50:50) 사업으로 '16년도 교부된 국고보조금 22억 82백만원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매칭사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시비 추가 편성하고자 증추경	p. 457
	중랑천(동대문구)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 설치	0	2,000	-2,000	○하천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월류교 설치가 불가하다며 하천점용허가가 반려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추경	p. 458
	하천통합관리방안 연구용역	0	140	-140	○용역 성격상 학술용역(연	p. 460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구용역)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학술용역에 사용이 불가하여 전액 감추경	
	국가하천 유지보수	3,128	0	3,128	○국가하천(한강, 중랑천, 안양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교부된 국고보조금 32억 28백만원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	p. 459
신규	한강본류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반납	16	0	16	○2015년도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기부과한 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협약서에 의해 정산 반납(인천시·경기도)	p. 447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8,900	0	8,900	○한강의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89억원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	p. 461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797,514	747,508	50,006		
계속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	2,250	2,000	250	ㅇ통수능부족 하수관로 개량 공사로 기존 통신관로와 주요 간섭시설들의 상충으로 이설작업 선행요구 ㅇ공사구간 지장물(상수도, 통신관로) 이설 비용 증 추경	p. 450
	사당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	700	1,500	-800	ㅇ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으로 전차 용역의 관로신설 L=4.1㎞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검토 과정에서 변경(게이트펌프 4개소, 관로신설1.1㎞)하여 용역을 발주 시행함에 따라 금회 필요한 사업비만(700백만원) 반영하고 편성된 1,500백만원 중 800백만원은 감추경	p. 452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74,115	75,609	-1,494	ㅇ공공운영비(매립지 반입수수료) 불용예상에 따른 감추경(15억) ㅇ'16년도 조류피해예방조치를 위한 약품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6백만원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	p. 454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37,384	36,184	1,200	ㅇ'16년 시설현대화 시운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부족한 공공운영비 증추경	p. 463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7,870	17,020	850	ㅇ한전전력요금할인폐지 및 내부설비증가로 전기요금 300백만원 증추경 ㅇ오염기준 준수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폐기물처리비 550백만원 증추경	p. 464
신규	노후 하수관로 정비	50,000	0	50,000	ㅇ예비비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금년 내 교부가 될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	p. 449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0,901	28,285	2,616		
계속	상수원수질개선민간단체지원	223	222	1	○성립전 예산처리 -민간단체 수질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최종금액이 상승 지급	p. 439
계속	잠실상수원관리	575	565	10	○성립전 예산처리 -잠실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지자체간 업무체계 강화를 위한 기금이 지급	p. 441
계속	환경기초시설설치	12,748	10,693	2,055	○성립전 예산처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 등을 정비하여 상수원 수질오염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최종금액이 상승 지급	p. 440
신규	조류대응정수비용지원	550	0	550	○성립전 예산처리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제거에 소요되는 정수비용 지원 확정 지급	p. 442

Ⅳ. 검토의견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381.1% 증가한 199억 46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2,214억 4천만원임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7,975억 14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7,975억 14백만원

3)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 출 : 기정예산과 동일(339억 31백만원)

4)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한 309억 1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한 309억 1백만원

○ 금회 서울시가 제출한 물순환안전국의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한 1조 837억 86백만원(총계규모)으로,

○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81.1%(158억원) 증가한 199억 4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9%(162억 81백만원) 증가한 2,214억 4천만원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500억 6백만원) 증가한 7,975억 14백만원이며,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26억 16백만원) 증가한 309억 1백만원임.

○ 물순환안전국 2016년 세입 추경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2016년 국고보조금 교부 및 내시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45조[1]에 근거한 성립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

1)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물순환안전국 소관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051억 59백만원 대비 7.9%(162억 81백만원) 증가한 2,214억 4천만원으로,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하천통합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총 9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음.

1) 중랑천(동대문구)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 설치 (사업별설명서 P.458)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2,000,000	△2,000,000	
시 설 비	-	2,000,000	△2,000,000	- 구조물공 : 1,500,000 - 복구(체육공원 등) : 500,000

○ 동 사업은 중랑천 좌·우안에 운동시설과 생태숲, 친수공간(테마광장, 피크닉장 등) 등을 조성함과 동시에 좌·우 양안을 연결하는 보행교(월류교)[2]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20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절차 이행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이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하는 월류교 형식의 교량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최종 반려함('16.10.4.)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져 기정예산 20억원

2) **월류교** : 양쪽 제방보다 낮게 설치되어 홍수 시 물이 교량을 넘어가는 다리

전액 감액하는 것임.

- 이처럼 관련기관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집행 가능여부를 먼저 타진한 후, 그 가능성이 충분할 때 편성하는 예산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하천통합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별설명서 P. 46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140,000	△ 140,000	
시 설 비	-	140,000	△ 140,000	- 학술용역 연구용역 시행

○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동 사업 역시 금회 기정예산 1억 4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 물순환안전국은 감추경 사유로, 용역 성격상 '학술용역'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과목 불일치로 집행이 불가하였다는 입장임.

-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예산과목 설정으로 인해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미시행으로 행정적 손실도 크다 할 것이므로 향후 철저한 확인과 검토과정을 통해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3)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P. 461)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900,000	-	8,900,000	
시 설 비	8,900,000	-	8,900,000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 등

○ 동 사업은 3년간('16년~'18년)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 홍수방지 및 나들목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의 한강협력계획의 일환으로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으로 금회 89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지원[3]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사업비 492억원 중 1차분인 89억원이 2016년 8월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 당초 사업계획을 한강사업본부장이 한 것을 물순환안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사업추진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3) 국비 총 492억원 중 '16년 89억원, '17년 206억원, '18년 197억원 교부계획

(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75억 8백만원 대비 6.7%(500억6백만원) 증가한 7,975억 14백만원으로, 구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 사당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총 6개 사업에 해당함.

1) 사당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 (사업별설명서 P.452)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700,000	(×) 1,500,000	(×) △800,000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700,000 = 700,000
시 설 비	(×) 700,000	(×) 1,500,000	(×) △800,000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700,000 = 700,000

○ 동 사업은 사당역 일대 통수능력이 부족한 간선하수관로를 확대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5억원 대비 8억원(53.33%) 감소한 7억원을 편성하였음.

○ 감액사유는 2013년 7월부터 하천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기본설계' 용역결과 중 하나인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추진방안(2015.07.30.)'이 마련됨에 따라

- 기 편성된 정비공사 보다 사당역 일대 관로부분 단기대책 및 실시설계를 먼저 선행하고자 사업비 15억원 중 7억원은 설계용역비로 전용하여 편성하고 나머지 8억원은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추진방안이 2015.7.30.일에 마련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당시 진행 중인 연관사업들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별설명서 P.454)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000) 74,115,335	75,609,335	(×6,000) △1,494,000	
공 공 운 영 비	32,578,068	34,078,068	△1,500,000	- 전년대비 슬러지발생량 감소로 매립지 반입수수료 감액
민 간 위 탁 금	(×6,000) 41,537,267	41,531,267	(×6,000) 6,000	- 성립전예산 처리 : '15년 3분기 총인 방류수질을 저감하여 조류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교부

○ 동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금회 기정예산 756억 9백만원 대비 14억 94백만원(1.9%) 감소한 741억 15백원을 편성하였음.

○ 감추경 사유는 전년대비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하여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5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슬러지 발생량 감소는 2016년도 유입하수 SS농도(유기물 농도)가 과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함.

○ 또한, 민간위탁금의 6백만원 증액은 환경부가 2015년 3분기 총인 방류수질 저감을 통해 조류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설에 대해 2015년 12월에 6백만원을 추가 교부함에 따른 것으로 총인 약품비 6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회 추경 편성 한 것임. 특이사항은 없음.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9억 1백만원 대비 9.2%(26억 16백만원) 증가한 309억 1백만원으로, 상수원수질개선민간단체지원 등 총 4개 사업이 추경 대상임.

1)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사업별설명서 P. 442)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공공운영비	(x550,000) 550,000	(x-)	(x550,000) 550,000	

○ 동 사업은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제거에 드는 정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5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 2012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녹조발생에 따른 정수비용 지원에 합의하고, 이를 근거로 2014년 5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4]가 개정되어 정수비용 지원 항목이 신설됨에 따른 것임.

○ 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편성하여, 2016년 6월에 서울시로 지원금액 5억 5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나,

---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3. 생략

14. 조류(藻類) 주의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淨水) 비용의 지원(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15. 생략

○ 이 같은 사업의 경우는 예산 집행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류발생 시기 이전에 교부되어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겠음.

(4) 명시이월 ([붙임] 조서 참조)

○ 금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43개 사업에 총 1,114억 25백만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붙임 1]과 같음.

○ 명시이월 사업 중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의 경우 강우 시 당산동, 문래동, 영등포구 유역에서 발생되는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중 고농도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 기정예산 70억 37백만원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14억 89백만원을 합한 총 84억 68백만원 전체를 금회 명시이월 하고 있음.

- 이는 입찰과정에서 실적제한 등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었고, 2016년 1월 서울시 CSOs 저류조 설치사업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공정하게 설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경우 500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12월 환경부가 노후하수관리 정비를 위해 국비 5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기획재정부가 서울시 하수도 정비사업은 법상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부가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금년 내에는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 만약 금년 내로 교부되지 않을 경우 동 예산은 차년도 예산에 허수가 되어 예산편성의 불합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획재정부를 최대한 설득하여 연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사전절차 지연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 예산편성 시점에서도 사전절차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조체계 마련 및 과학적 검토를 통해 사전절차 이행 가능 수준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불임〕 1. 명시이월 사업 조서

[불임 1]

- 명시이월 대상사업 (총 43건 111,425백만원) -

■ 일반회계(20건, 35,3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순번	과명	사 업 명	이월 내용	예산액	2016 이월액	이월사유
계				46,198	35,365	
1	물순환 정책과 (4건)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00	224	<사전절차지연> ㅇ용역수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2		서울형 물순환 협력 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 모니터링 용역	용역비	200	100	<사전절차지연> ㅇ용역수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3		가뭄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사무관리비	200	150	<사전절차지연> ㅇ가뭄관련용역(10.31일완료)에서 제시되는 시민홍보 방안에 따라 예산집행 필요
4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시설비 8,061백만원 감리비 407백만원	8,468	8,468	<사전절차지연> ㅇ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따른 환경부 승인 지연 및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계약지연
5	하천 관리과 (16건)	관악산저류조 설치	감리비 69백만원 이월	1,500	69	<기타> ○감리 계약기간이 ´17.1.31로 집행 시기 미도래
6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시설비4,920백만원이월 감리비267백만원이월	6,430	5,187	<사전절차지연> ㅇ사업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주차장추가)에 따른 심의지연으로 미집행 잔액 이월 ㅇ감리계약 기간이 ´17.6.1로 집행시기 미도래
7		대림3유수지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100백만원 이월	100	100	<기타> ○자치구에서 자체 발주 용역사업인 대림3유수지내 기존 재활용센터를 문화시설(박물관)로 변경하는 용역이 7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본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가 늦어졌으며, 현재 제안서 평가 중에 있고 12월에 용역계약 예정으로서, 명시이월하여 '17년도 집행계획임.
8		도림2유수지 복개공사	시설비4,100백만원 이월	4,300	4,100	<본공사, 용역지연> ○도림유수지 복개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6.10월말 준공예정으로서, 시설공사비를 명시이월하여 '17년도에 집행계획임.

9		성북천 유지용수 공급개선 사업	시설비101백만원 이월	150	101	**<사전절차지연>** ㅇ 성북천 유지용수는 청계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계천유량변화 검토 등 타당성조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ㅇ 실시설계 용역을 8월 착수예정이었으나, 2회 유찰되어 현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중에 있어 2016.10.1.~12.31 용역시행 후 '17년 공사 시행을 위해 명시이월 필요
10		중랑천마스터플랜 단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1,100백만원	1,600	1,100	**<사전절차지연>** ㅇ '16.2월 국토교통부(중랑천하천관리청)에서 중랑천 홍수방어 대책을 제안하여 협의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16.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용역완료가 어려운실정이며 ㅇ 국토부에서 제안한 중랑천 홍수방어 대책 용역시행을 위해 사업비 명시이월필요 ※ 국토부 제안 - 서울시 30%부담 (12억원) - 연내 MOU체결 예정
11		광나루터(광진구)주변 수변 무대 설치	시설비 2,000백만원	2,000	2,000	**<사전절차지연>** ㅇ 수변무대를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터(한강) 일대에 조성코자 하였으나, 동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치가 어려우며,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 등 검토 중에 있으므로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의 명시이월 필요
12		청계천 개선보완사업	시설비 1,590백만원	2,000	1,590	**<본공사,용역지연>** ○ 설계용역 사전절차 지연, 도심지 하천내 공사로 수방기간(5.15~10.15)이후 공사 시행에 따른 착공지연
13		오류천 복개구조물 확장	시설비 700백만원 감리비 100백만원	2,000	800	**<사전절차지연>** ㅇ 하천심의 및 기술심의 수리검토(3D)에 따른 지연
14		동방1교 재설치공사	시설비 1,000백만원 감리비 60백만원	2,000	1,060	**<사전절차지연>** ○ 설계용역중 인접 신림경전철 간섭부분 협의 등으로 설계지연 ○ 설계기간이 늘어나 공사발주 및 착수는 10월말 예정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필요
15		시흥천 단면확장	시설비 500백만원 감리비 150백만원	2,000	650	**<사전절차지연>** ○ 설계VE,계약심사 등이 8월 초에 완료되어 ○ 8.9일 공사발주하여 8.00일 계약하여 공사시행중 ○ 공기부족에 따라 공사비 이월 필요
16		여의천 하천정비(단면확장)	시설비 700백만원	2,050	700	**<보상협의 지연>** ○ 토지보상 대상자 사망에 따른 가족간 분쟁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됨 ○ 토지수용위원회 개최(9.30)시 공탁금(10억원)은 집행가능하나 공사비 일부는 이월 필요

17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시설비 7,000백만원	8,000	7,000	**<사전절차지연>** ○ 수리모형 실험을 위한 자문회의 시 보완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수리모형실험 지연 ○ 현장조사중 발견된 지장물에 대해 보완설계 과정에서 사업지연 ○ 10월말 착공 예정으로 이월 필요
18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시설비 1,800백만원 감리비 50백만원	2,500	1,850	**<사전절차지연>** ○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 계약심의위원회(동작구)결과에 따라 조달청발주 하였으며, 11월초 착공예정으로 공사비 일부 이월 필요
19		사당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시설비 40백만원	100	40	**<사전절차지연>** ○ 사업방향에 대해 시의원 협의 및 용역발주전 사전절차 (과업내용서 공개, 서울연구원 협의)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 필요
20		광장동 빗물펌프장 용역비	시설비76백만원	100	76	**<본공사, 용역지연>** ○'16.10월 광장유수지 타당성조사 용역(23,800천원)) 완료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시행 예정으로, 예산 잔액을 명시이월하여 '17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코자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18건, 62,9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순번	과명	사 업 명	이월내용	예산액	2016 이월액	이월사유
계				118,499	62,929	
1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	시설비	1,000	554	**<사전절차지연>** 사전절차 이행(건설기술 심의 등)과 입찰과정에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한 사업으로 업체선정에 시일이 소요되었음. 용역 계약기간이 2016.5.17.~2017.5.16.까지로 용역과업이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2	물재생계획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시설비	2,500	985	**<사전절차지연>** 기 시행 중인 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한 방향 및 사업규모 설정으로 용역 발주가 지연되었음. 용역계약기간은 2016. 8. 9. ~ 2017. 4. 5. 까지로 연내 용역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3	물재생계획과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사무관리비	9	9	**<기타>** 본 사업은 2016년 2월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진행예정이던 사업으로 2016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2017년 초로 연기함에 따라 201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4	물재생계획과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시설비	3,987	3,897	**<공사중 장애발생>** 가양역사거리 지장물(광역상 수도, 한전케이블 등 다수) 이설 지연(한전케이블 이설 설계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16.5 기본설계 한전제출, '16.6 실시설계 한전 제출, '16.8 실시설계 보완요청, '16.10 설계완료 및 공사착수, 금년도 추진 공사분의 계약기간이 2016.2.2.~2017.8.31.까지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5	물재생계획과	방이동43번지 주변 사각형거 개량	시설비	450	357	**<공사중 장애발생>** 방이동 43번지내 하수박스 사유지내 이설공사 임. 사업구간내 방이동43 오피스텔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해 인접 방이동43-6호 건축물에 건물균열, 누수등의 피해 발생으로 오피스텔 건축회사와 방이동43-6호 건물주와 소송 진행중이며, 재판부에서 현장감정 진행으로 공사지연
6	물재생계획과	사당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	시설비	1,500	292	**<사전절차 지연>** 상위계획(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기본설계) 변경 및 용역기간 연장으로 실시설계 발주가 지연됨. 본 용역은 2016. 7. 13. ~ 2017. 5. 8. 까지로 연내 용역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7	물재생계획과	성산1동 37-8번지 주변 하수관로 개량	시설비	700	700	**<사전절차 지연>** 당초 사업계획을 망원배수구역 전차용역('15.12)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용역시행 관련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공고, 입찰자 선정 등 기간소요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8	물재생계획과	망원2동 470-24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	시설비	430	430	**<사전절차 지연>** 당초 사업계획을 망원배수구역 전차용역('15.12)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용역시행 관련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공고, 입찰자 선정 등 기간소요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9	물재생계획과	노후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50,000	50,000	**<기타>** 예비비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내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금년 내 예산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함
10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3,000	1,152	**<사전절차 지연>** 4개 물재생센터 슬러지자체처리 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으로 설계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용역비 지출잔액을 이월코자 함 -이월액 : 시설비1,152,000천원 -불용액(예상) : 시설비 696,075천원 (원인행위완료)
11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감리비	44,600	290	**<본공사, 용역지연>** 감리원 투입조정(하도급사 손실보전 요구분쟁 공사중지기간 감리원 투입축소)에 따른 지출잔액을 이월코자 함 (원인행위완료)
12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및 감리비	3,200	1,707	**<사전절차 지연>** GB관리계획 변경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16. 8월 발주한 악취저감 설비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출잔액을 이월코자 함(원인행위완료) -이월액 : 시설비 1,587,456천원 감리비 120,000천원 -불용액(예상) :시설비 46천원 시설부대비 12,000천원
13	물재생시설과	지역형 소규모 수처리시설	시설비	500	217	**<사전절차 지연>** 용역발주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 지출잔액을 이월코자 함 (원인행위완료) -이월액 : 시설비 216,690천원 -불용액(예상) : 시설비 67,310천원
14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시설비	3,761	1,026	**<사전절차 지연>** ◦4개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으로 기본설계 완료 후 2차계약 진행중 ◦각 분야별(토목,기계,전기,기자재) 공사발주에 대한 관련기관(중소기업청, 조달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준공기한 연장필요('16.12월→'17.2월)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원인행위완료)
15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 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120	84	**<사전절차 지연>** 당초 예산액(120백만원)을 1차용역(기본계획연구용역), 2차용역(설립타당성 검토연구용역)으로 분리하여 발주함에 따라 1차 연구용역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하여 17년 초에 2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 행자부 고시(제2016-11호)에 의거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의뢰해야 함
16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400	143	**<사전절차 지연>** 용역이 '17.1.26일(준공예정일) 완료될 예정이므로 계약금액 중 미지출금액 이월예정 (원인행위완료) -이월액 : 143,148천원 -불용액(예상) : 113,704천원
17	중랑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오니처리 유지보수	시설비	966	966	**<사업계획 변경>** ㅇ소화가스 탈황설비의 소요용량은 총 5만㎥/일으로 `16년3만㎥/일×1대 및 `17년2만㎥/일×1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7년에 5만㎥/일×1대를 설치하여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상 운영효율을 기하고자 함. ㅇ`17년부터 적용되는 굴뚝TMS장비 구매설치후 관련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와 통함검사 일정이 소요되어 검수기일이 연장될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
18	중랑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376	120	**<기타>** - 탈수시설에서 상시 발생되는 슬러지케익을 수집하여 매립지로 운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6.12.31일까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함으로 12월분 처리분은 2017년 1월이 되어야 정산가능하여 이월함.

■ 도시개발특별회계(4건, 12,9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순번	과명	사 업 명	이월 내용	예산액	2016 이월액	이월사유
계				20,190	12,991	
1	하천 관리과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시설비 1,400백만원 감리비 200백만원	3,924	1,600	**<사업계획 변경>** ○ 빗물펌프장 설치위치 변경으로 교통처리계획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설공사가 지연됨
2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시설비 9,260백만원 감리비 700백만원 시설부대비 40백만원	10,000	8,723	**<사전절차지연>** ○ 실시설계 기간소요로 본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누적 이월예산 발생 ○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민원제기 및 현장여건 변동(설계대비 암질상이)에 따른 공기 지연
3		합정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	도급비,관급비2,331백만원 감리비90백만원	5,966	2,421	**<본공사, 용역지연>** ○ 주택 밀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공사로 진출입로와 작업공간 협소 및 주변 건축물 인접으로 인해 공사차량 진출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 이로 인해 당초 관로부설 및 펌프장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분리하여 공사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됨
4		흑석빗물펌프장	타당성용역:22,845 타당성조사(행자부):100,000 기본계획:123,855	300	247	**<사전절차지연>** ○금년도에 펌프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으로, 현재 이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16.11월 이전방안 확정 완료 후, '17년도에 행자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 필요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1건, 1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순번	과명	사 업 명	이월 내용	예산액	2016 이월액	이월사유
1	물순환 정책과	환경기초시설설치	송파구 방이동 43번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도급비	12,748	140	ㅇ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해 인접 방이동43-6호 건축물에 건물균열, 누수등의 피해 발생으로 오피스텔 건축회사와 방이동43-6호 건물주와 소송 진행중이며, 재판부에서 현장감정 진행으로 공사지연